

요 약

- IFRS17 도입과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사전예고되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 개정안은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관련 조문에 대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IFRS17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 용어 및 부채와 자본항목이 변경되고 생·손보 간 동일한 재무제표 표시체계가 마련되었으며 발생주의 계정과목 신설, 특별계정 표시 및 사업비 회계처리 등이 변경됨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각각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부채항목의 계약자 지분조정을 자본항목으로 변경 및 신종자본증권을 자본항목에 추가하고 생·손보 간 동일하게 표시함
 - 보험료 수익, 미상각신계약비 등 현금주의 계정과목을 삭제하고 예상보험금, 예상사업비 등 발생주의 계정과목이 신설됨
 - 포괄손익계산서에 퇴직연금,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수익, 비용은 일반계정과 합산하여 표시함
 - 현행과 달리 사업비 배분 및 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회사 정책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음
- 책임준비금 구성, 포트폴리오 구분, 회계모형 적용 기준과 미래현금흐름, 보험계약마진, 할인율, 위험조정 등 보험부채평가 기준을 제시함
 - 책임준비금은 생·손보 동일하게 '보험계약부채', '재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로 구성하며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등 계정과목과 산출 기준이 삭제됨
 -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 단위만 제시하여 보험회사가 보다 세분화된 단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모형 외에 보험료배분접근법과 변동수수료접근법에 대한 적용 기준을 제시함
 - 미래현금흐름, 보험계약마진은 원칙론적인 기준만 제시되고, 할인율과 위험조정만 감독목적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
- 보험상품 관련 개정 내용은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 일부 문구 수정으로 한정됨
- 보험감독회계가 원칙 중심으로 변경되어 보험회사는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험부채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험부채평가는 선임계리사를 통한 자체 검증과 더불어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을 통한 적정성 검증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무표준 등을 활용한 업계 자율규제가 필요함
- 감독당국은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회사 및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교육자료 및 해설서 배포 등을 통해 보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IFRS17 도입 관련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사전예고됨(2022. 1. 12)
 -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¹⁾을 통해 논의되었으며 IFRS17 도입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2021. 7. 20 발의)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임
 - 개정안에서는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관련 조문에 대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상위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나 보험회사가 2023년 IFRS17 시행을 위한 비교 재무제표 작성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감독회계 및 상품제도에 대한 개정안을 미리 예고함²⁾
 - 2023년 IFRS17 시행을 위해서는 2022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정보를 비교하는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시스템 검증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함
- 사전예고된 개정안상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2. 보험감독회계 관련 주요 내용

가. 재무제표 표시 및 회계처리

- (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표시체계를 IFRS17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재무제표 용어 변경, 부채와 자본 항목 변경, 생·손보 간 동일한 재무제표 표시체계를 마련함(표 1) 참조)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각각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부채 항목의 계약자 지분조정을 자본 항목으로 변경 및 신종자본증권을 자본 항목에 추가함
 - IFRS17은 미래 계약자배당 등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므로 배당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본계정에서 '계약자 지분조정'(현행 계약자지분조정-미래 계약자배당액)을 표시함
 - 생·손보 간 상이하게 사용한 손익계산서 항목을 업권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재무제표 표시체계를 변경함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1. 30), “'23년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21년 상반기 국회 제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9. 27),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운 영방안과 IFRS17에 대비한 법규개정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표 1〉 재무제표 표시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생보	손보	재무제표	생·손보 동일
대차대조표	(자산) 운용, 비운용, 특별계정 (부채) 책임준비금, 계약자 지분조정, 기타부채, 특별계정부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재무상태표	(자산) 현행 동일 (부채) 책임준비금, 기타부채, 특별계정부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u>신종자본증권</u> , 계약자 지분조정,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손익계산서	보험손익, 투자손익, 책임준비금 전입액 등	경과보험료, 발생손해액, 보험환급금 등	포괄손익계산서	보험손익, 투자손익, 영업손익 등

○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기준) 자산 및 부채 계정과목은 IFRS17(보험계약) 및 IFRS9(금융상품) 체계를 동시에 반영³⁾하였으며 손익 계정과목은 보험료 수익, 미상각신계약비 등 현금주의 계정과목을 삭제하고 예상보험금, 예상 사업비 등 발생주의 계정과목을 신설함

- **(자산)** 자산 계정에서 ‘단기매매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각각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당기손익인식 지정 금융자산’과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을 삭제하는 등 IFRS9 체계로 구성함
- **(부채)** 책임준비금 계정이 최선추정부채,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으로 전면개편되었으나 ‘보험계약대출’, ‘계약자 배당부채⁴⁾’, ‘보증준비금’, ‘구상채권’은 감독목적에 필요한 정보성 계정으로 존재함
- **(손익)** 현금주의 계정과목인 보험료 수익, 미상각신계약비 등을 삭제하고 발생주의 계정과목인 예상보험금, 예상사업비(손해조사비, 계약유지비, 투자관리비), 위험조정 변동, 보험계약마진 상각 등을 신설함

○ (특별계정 표시체계) 일반계정과 구분한 특별계정(퇴직연금, 변액보험 등)은 IFRS17 체계에 따라 일반계정과 합산하여 표시하므로 원리금 보장형 특별계정에 대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신설함(〈표 2〉 참조)

- **(재무상태표)** 퇴직보험과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은 일반계정과 합산하고,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실적 배당형은 현행과 동일하게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총액으로 한 줄 표시함
- **(포괄손익계산서)**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과 구분 없이 모두 합산하여 표시함

〈표 2〉 특별계정 표시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퇴직보험,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일반계정과 구분	일반계정과 구분	일반계정과 합산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적 배당형)			일반계정과 구분	일반계정과 합산

3) IFRS9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보험회사는 IFRS17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체계를 동시에 반영함
4)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이 해당됨

- (사업비 회계처리) 현행은 실제 사용한 신계약비에 대한 최대 이연기간(7년)과 한도가 제시되고 사업비에 대한 세부 분류 기준이 제시되나, 개정안은 사업비 배분 및 분류 기준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
 - IFRS17에서 보험계약에 귀속 가능한 직접 사업비는 부채 현금흐름에 포함되고 귀속되지 않는 간접사업비⁵⁾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 감독회계에서도 IFRS17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 대신 회사 정책의 근거를 문서화하고 매 회계 연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규정함

- (재보험) 재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전가 기준을 원보험계약과 동일하게 ‘부가급부금 비율⁶⁾’을 적용하고 재보험계약자산의 감액처리 기준을 ‘발생손실모형’에서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개선함
 - 원보험의 위험전가 기준은 부가급부금 비율을 적용하고 재보험의 위험전가기준은 기대손실모형으로 서로 상이하나 개정안은 재보험도 원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전가 기준으로 부가급부금 비율을 적용함
 - 재보험계약자산의 감액처리는 손상사건 발생 시 전액손실로 처리하는 ‘발생손실모형’이나 개정안은 미래 전망을 토대로 기대손실을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개선함
 - 이러한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감독회계가 아닌 건전성회계제도(K-ICS)에서 규정함

나. 책임준비금 구성 및 산출기준

- (책임준비금 구성)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으로 구분된 책임준비금을 생·손보 동일하게 ‘보험계약부채’, ‘재보험계약부채’, ‘투자계약부채’로 구분하며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등의 계정과목과 산출 기준뿐만 아니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와 재무건전성 준비금도 삭제됨(〈표 3〉 참조)
 - 보험계약부채 및 재보험계약부채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인 잔여보장요소와 발생한 보험사고인 발생사고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의 하위 항목은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으로 구성됨
 - 현행 지급준비금 항목인 개별추산액, 미보고발생손해액, 실효비금, 장래손해조사비 등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에 대한 계정과목과 산출 기준⁷⁾이 삭제됨
 - 다만, 감독목적을 위해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배당부채, 보증준비금, 구상채권은 별도로 표시함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는 IFRS4에서 IFRS17을 준비하기 위해 도입된 기준이며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보험회사 자본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기준이므로 IFRS17 도입으로 삭제됨

5) 주로 상품개발비, 교육훈련비가 간접비에 해당되며 간접비 비중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므로 당기순이익 감소요인으로 작용함

6) 부가급부금 비율은 보험사고 미발생 시 지급금 대비 부가급부금(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금-보험사고 미발생 시 지급금)의 비율로 10% 이상인 경우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있다고 간주함

7)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5] 지급준비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 기준, [별표6] 통계적 방법에 의한 지급준비금 계산 기준, [별표7]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 기준, [별표8] 손해보험의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산출 기준

〈표 3〉 책임준비금 구성 비교

현행		개정안
생보	손보	생·손보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지급준비금 • 재보험료적립금 • 보증준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지급준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부채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보장요소(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보험료배분접근법) - 발생사고요소(최선추정, 위험조정) • 재보험계약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보장요소(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보험료배분접근법) - 발생사고요소(최선추정, 위험조정) • 투자계약부채

주: 1)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배당부채, 보증준비금, 구상채권은 별도 표시함

○ (포트폴리오 구분)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단위만 제시하여 보험회사가 보다 세분화된 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나, 판단 기준을 문서화하고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표 4〉 참조)

- 원수보험은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의 포트폴리오 구분단위를 제시하였으며 재보험은 이 중 '유배당/무배당/변액' 포트폴리오를 제외하고 '복합' 포트폴리오가 추가됨
-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성하여야 하며, 같은 계약집합은 발행 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표 4〉 포트폴리오 구분 단위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배당/무배당/변액 사망 • 유배당/무배당/변액 건강 • 유배당/무배당/변액/자산연계형 연금·저축 • 유배당/무배당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배당/무배당 상해 • 유배당/무배당 질병 • 유배당/무배당 재물 • 유배당/무배당 연금·저축 • 유배당/무배당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화재, 종합, 해상, 근재, 책임, 상해, 기술, 보증, 자동차, 기타) • 해외

○ (회계모형) 잔여보장요소 평가를 위한 회계모형으로 '일반모형'뿐만 아니라 '보험료배분접근법'과 '변동수수료접근법'에 대한 적용 기준과 예외사항을 제시하며, 회계모형의 적용 절차 및 내용의 문서화와 일관성을 제시함

-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일반손해보험 중 보험기간 1년 이하일 때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사항⁸⁾을 허용함
- 변동수수료접근법은 보험계약 중 기초항목의 가치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적용가능함

8) ①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본점의 회계정책을 준용하는 등 일반모형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전업 재보험회사 및 보증보험회사가 일반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임

- (미래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되는 계리적 가정 정보의 이용 범위, 산출 기준의 일관성 및 절차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계리적 가정에는 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보험료, 계약자 행동, 경영자 행동 등이 포함됨
 - 계리적 가정 산출 시 회사의 내·외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의 내부정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외부정보는 이용의 적절성, 합리성 등에 대한 판단 근거 및 검증이 필요함
 -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은 매 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되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 변경 후 가정의 합리성, 의사결정과정의 문서화 등을 통해서 산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보험료는 회사의 경험통계 기반으로 산출하며 실효, 해약 등 계약자 행동은 과거 계약자 행동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고 경영자 행동은 자산투자, 계약자배당, 사업비 정책 등을 반영함

- (보험계약대출) 현행은 자산의 계정과목이나 IFRS17에서는 부채 현금흐름에 포함되므로 보험부채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며, 회사의 경험통계를 고려하여 합리적 가정을 설정함
 - 회사 경험통계, 상품별 보험계약대출 한도 등이 고려된 합리적 가정을 적용하고 설정 및 변경 근거는 문서화하며 보험계약대출 관련 예상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 차이를 업무보고서로 제출함

- (위험조정) 회사의 자체 위험회피 성향을 반영하여 정한 신뢰수준 및 위험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확실성 요인 종류와 신뢰수준 등 감독목적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만족해야 함
 - 생보 및 장기손해보험 잔여보장요소의 위험조정 산출 시 불확실성 요인은 '사망', '장수', '장해·질병', '장기재물·기타', '해지', '사업비'로 구분되며 신뢰수준 75%의 충격수준이 제시됨
 - 일반손해보험 위험조정 산출 시 보장그룹은 '재물', '책임', '일반기타', '자동차', '보증'으로 구분되며 신뢰수준 75%의 충격수준이 제시되고, 최선추정금액 분포의 표준편차 50%보다 큰 값을 적용함

- (할인율) 원화와 외화로 구분한 통화별 할인율을 적용하며, 수익률 곡선 및 확률론적 시나리오 생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최종관찰만기, 장기선도금리 최초 수렴시점, 장기선도금리 산출, 유동성 프리미엄 등을 이용하여 산출)는 감독원장이 제시하고 확률론적 금리 시나리오 개수는 1,000개 이상이며, 금리 시나리오 생성모형으로 Hull-white 1 factor 모형 사용 기준도 제시함
 - 원화에 대한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는 감독원장이 제시하나, 해외 통화 및 변액보험 펀드를 포함한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제시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직접 산출해야 함

- (보험계약마진) 경과 연도별 수익 인식 금액에 대해서는 기간별 보험계약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산출한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음
 - 보험계약서비스 제공량의 크기는 보험계약이 제공하는 보장서비스와 투자서비스를 함께 고려하며 보장서비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보장위험의 발생빈도와 반복발생 정도를 반영함

- (문서 작성)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하여 회계정책서, 계리방법서 등을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의 작성자·검토자·승인자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함
 - 회계정책서는 IFRS17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함에 있어 회사가 선택한 회계정책 및 해당 정책의 선택 근거를 상세히 기술하며, 계리방법서에는 책임준비금 하위 계정인 최선추정·위험조정·보험계약마진·보험료배분접근법 평가 시 적용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 (전환 시 회계처리) 보유계약에 대해 변경된 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하기 위해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급법 적용기간과 공정가치법 적용요건을 제시함
 - IFRS17을 보유계약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발행시점으로 완전 소급하여 처리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음
 - 소급법은 비교 가능성을 위해 소급기간을 전환일(2022. 1. 1) 기준 최대 5년(2017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공정가치법 적용을 위해서는 최초 적용일(2023. 1. 1) 3개월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 공정가치법은 K-ICS의 현행추정부채와 위험마진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함
 - 현행추정부채에서 대상계약은 IFRS17과 일치시키며 보험계약대출은 부채의 차감항목으로 함
 - 위험마진은 신뢰수준법이 아닌 자본비용법을 적용하고 이때 자본비용률은 5%를 적용함
 - 할인율은 IFRS17이 아닌 IFRS13(공정가치 측정)에 기반하므로 보험계약의 불이행 위험을 반영하여 산출함



3. 보험상품 관련 주요 내용

- (용어 변경) 현행 원가방식인 ‘보험료적립금’은 ‘계약자적립액’으로 변경하고 기초서류의 명칭 및 해약환급금 관련 문구를 정비함
 - 해약환급금 산출을 위해 ‘보험료적립금’을 ‘계약자적립액’으로 변경하고 기초서류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로 변경함
 - 해약환급금 관련하여 해지환급금, 해지공제, 해약공제 등 문구가 구분 없이 사용되어 해약환급금 및 해약공제로 통일함

 - (공시기준이율)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위해 IFRS17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계정과목을 산출식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문구를 조정하고 시행일 이전 판매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 운용자산이익률은 투자영업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IFRS17로 인해 발생한 계정과목인 ‘보험금융수익’과 ‘보험금융비용’을 반영하면 운용자산이익률이 왜곡될 수 있어 제외할 필요가 있음
- 9)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변동효과로 인해 발생한 수익(비용)으로 현행 기준의 책임준비금 전입액 중 금융요소에 해당함

- 또한 이러한 사항을 시행일(2023. 1. 1) 이전 판매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적용함
- 한편 IFRS17은 보증준비금 계정이 없으므로 운영자산이익률 계산 시 제외되는 파생상품 손익을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변동성’ 헷지 목적에서 ‘변액보험 부채변동성’ 헷지 목적으로 문구를 조정함



4. 시사점

- 보험감독회계가 보험부채 평가항목인 할인을 및 위험조정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원칙 중심으로 변경되어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됨
 - 1980년 재무부에서 최초로 보험감독회계를 마련(보험회계의 표준회계규정 및 재무제표 규칙, 보험예규 1230-27-2)한 이후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나, IFRS17 도입으로 원칙 중심이라는 보험감독회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됨
 - 할인율은 원화에 대한 수익률 곡선을 감독원장이 직접 제시하며 위험조정은 감독목적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제시함
 -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되는 계리적 가정, 보험계약마진의 수익인식금액뿐만 아니라 사업비 배분 및 분류 기준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원칙 중심의 감독회계 대응을 위해 보험회사는 가정관리 프로세스 확립 및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IFRS17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상품개발 등 부서가 포함된 가정관리위원회 운영, 가정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집적 및 관리 등 가정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함
 - 감독회계에서 제시한 회계정책서, 계리방법서 등을 문서화하고 정책 선택 근거 및 평가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함
- 또한 보험부채 평가는 선임계리사를 통한 자체 검증과 더불어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을 통한 적정성 검증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무표준 등을 활용한 업계 자율규제가 필요함
 - 보험업법 개정안¹⁰⁾에서 선임계리사의 자격 및 권한을 확대하고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어 자체 검증을 강화하고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한 외부 검증¹¹⁾을 통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 해외와 유사하게 업계 전문가(계리사회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를 활용한 실무표준 작성으로 업계 공통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캐나다 계리사회는 다양한 계리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함
 - 국내는 현재 3개의 실무표준(보증준비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선임계리사 검증 의견서)만 존재하고 있음

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2021. 7. 20)

11)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의 2(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 최근 계리사회가 실무기준을 제정¹²⁾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화된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상품 관련해서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 일부 문구 수정 외에 큰 변화가 없으나, IFRS17 도입 이후 영업전략 및 손익 변동성 증가 등 환경변화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발생할 수 있음
 - 보험료 산출방식은 여전히 30이원에 기반한 현금흐름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어, IFRS17 도입 이후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품 관련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음
 - 자산부채관리(ALM)을 위한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활용이 증가한다면, 공시기준이율 산출 시 ALM 목적의 파생상품 손익은 제외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감독당국은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회사 및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교육자료 및 해설서 배포 등을 통해 보험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음
 - 최근 IFRS17 설명회¹³⁾가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고 『보험감독회계 도입방안』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보험회계 해설서¹⁴⁾』와 같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함
- IFRS17 관련 법규는 이번에 발표된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제도뿐만 아니라 건전성 제도 및 계리제도¹⁵⁾도 포함되므로 검토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12) 한국보험계리사회 보도자료(2021. 11. 8), “한국계리실무기준(KSAP) 제4호 및 IFRS17 계리적 가정 실무기준 제정”

1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 12. 29), “「IFRS17(보험계약) 설명회」 비대면으로 개최”

14) 보험업법 전면개정 및 IFRS 도입에 따라 2011년 7월에 감독당국은 『보험회계 해설서』를 개정하였음

15) 건전성 제도는 지급여력제도(K-ICS)외에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등이 있으며 계리제도는 손익분석, 계약자배당 등이 해당됨